

노 영 한
(本協會 편집국장)

- 기존양계업자도 신규양계장
 목 개시할 때 조세감면 혜택
 ○ 肉類가격 安定帶 설정
 차 ○ 병아리 수입통관의 간편화
 ○ 해외 양계산업 시찰단 모집
 ○ 불량추 生産의 문제점

기존양계업자도 신규양계장 개시할 때 조세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4조의8에 의하여 축산업을 중요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사업개시후 소득 발생년도와 다음해 3년은 소득세의 전액을 다음2년은 반액을 감면 받게 되어있다.

그간 우리업계에서 궁금하게 여기던 기존업자가 다른 지역에 신규로 축산업을 개시 하였을때의 감면혜택에 대하여 이번에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다음 공문내용과 같이 명확한 해답을 받았다.

재 무 부

직세 1234-725 1978.3.8

제목 조세감면 규제법 질의

1. 78.2.16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기존 축산업자가 새로이 별개의 사업장에서 축산업을 개시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당해 축산업의 소득을 기존의 축산업 소득과 구분하여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 장관

닭고기는 제외되어 양계업자 실망 더욱 좁아져

張德鎮 農水産部 長官은 21일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가격 安定帶를 설정, 오는 27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畜産物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다같이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도매시장의 肌肉 경락가격에 기준가격과 이를 중심으로 상하한 안정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상한가격으로 값이오르면 출하물량을 늘려 소비자를 보호하고 반대로 값이 하한가격으로 떨어지면 공급량을 줄여 값이 그이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 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소비자가격이 쇠고기 600g 1근당 2,000원 돼지고기는 1,000원을 유지키로하고 이를 위해 쇠고기의 경우 昇成가격제를 도입 현재 근당 2,400원 하는 한우고기를 2,000원으로 하는 대신 수입쇠고기를 1,600원에 공급, 이를 2,000원에 판매하도록 허용하여 정육점의 결손을 보전 하도록 했고, 정육업자에 공급될 수입 쇠고기의 양은 한우의 판매량에 따라 적정비율로 하되 우선 한우와 수입소의 비율을 반반으로 할 계획이라 한다.

한편 기존 농협직매장 174개를 600개로 늘려 수입 쇠고기를 1,600원에 돼지고기는 1,000원에 무제한 방출기로 결정 하였다고 한다.

특히 농협직매장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수원등 지방도시에도 70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기값 安定帶 설정은 우유외에 쇠고기 및 돼지고기가 生産價를 보장하여 안정된 生産業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 특히 물가 인상의 주도역할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오던 쇠고기값이 안정 되므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며 유통업자인 정육점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므로써 다목적 처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축산 당국의 그간 노력으로 축산진흥기금이 조성되고 생산기반이 구축 되어가고 있어 이번조치가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것을 바라나 년중 가장 가격 진폭이 심한 닭고기등 양계산물이 제외된데에는 대부분의 양계인이 정책으로 부터 소외당한 느낌을 갖지 않을수 없겠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것은 품질이 다른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를 동일 장소에서 같은 값으로 판매하고 같은 품질의 수입 쇠고기를 같은 서울시내에서 2,000 원과 1,600원의 2중가격으로 판매하는 문제점에 있다. 한우에 있어서는 현재 근당 2,400원 이상에 판매되어도 좀처럼 한우의 증식이 잘되지 않는 한우의 특수성이 있다. 이번 조치가 수입 쇠고기 판매 촉진으로 인한 국민 육류 소비구조를 육류중 가장 값이 비싼 쇠고기로 유도 편중시키는 결과가 되지않을까 우려된다.

쇠고기 1,600원 돼지고기 1,000 원으로 육어 놓았을때 닭고기의 실망은 점점 좁아져 양계인의 숨통은 답답하기만 하다.

수입통관 1242-1

수입
1
2
4
2
—
6
3
4
로

4 月의 안테나

입 1242-720(78. 3. 21)

공 문 내 용

관 세 청

수입 1242-634 78. 3. 13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외국중계 수입통관

1. 농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대한 양계협회에서 수입하는 외국중계 수입통관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어 이를 이첩하니 면허전 반출등 법령이 허용되는한 신속하게 통관에 협조할것.

첨부 민축산 1162-300(78. 3. 6) 사본 1 부
수신처 서울세관, 김해세관, 김포세관, 제주세관.

관 세 청 장

※ 참고 면허전 반출

관세법 제 143조(면허전 반출) ① 수입 신고를 한 물품을 면허전에 그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은 内國物品으로 본다. (改正 75. 12. 22)

관세법 시행령 제 127조(면허전 반출의 승인신청)

법 제14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자는 제68조 각호의 사항 신고의 종류 신고 년월일 신고번호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의 6 (면허전 반출승인 물품에 대한 세액등의 통지) (생략).

제68조(타소장치의 허가신청 (생략)

병아리 수입통관에 대하여 관할 세관에서 적극 협조토록 관세청에서 공문하달.

본회에서는 병아리 수입통관 절차가 현재 복잡 다단하여 병아리가 생물이라는 점과 장시간 수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등 병아리의 특수성에 비추어 통관시 검사를 생략하여 출것을 농수산부를 통해 관세청장에 요청한바 있다.

이에 대하여 지난 3월21일 관세청장으로부터 서울, 김해, 김포, 제주 세관장에 법령이 허용하는 한 신속한 통관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하달되었다.

이로서 병아리 수입시 복잡하던 통관업무가 간편화 되므로써 병아리 수입농장에 큰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농수산부에서 관세청장에 발송한 문서번호 축산 1162-300(78. 3. 6)

관세청장이 관할 4 개 세관장(서울, 김포, 김해, 제주)에게 발송한 문서번호 수

해외양계산업

시찰단 모집

본회에서는 우리 양계인들이 직접 선진외국의 양계산업을 방문, 폭넓게 분야별로 살펴보므로써 전문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을 다시한번 돌아보고 가늠하며 아울러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해외양계산업 시찰단을 구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 ① 시찰단편성 : 세계일주시찰반
미주시찰반
동남아시아시찰반
- ② 신청마감 : 78년 3월31일
- ③ 신청접수처 : 서울 중구 양동 44-28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전화 : 22-3571~2)

우리나라의 養鷄産業은 外國으로부터의 種鷄 및 飼料導入과 함께 各種 선진외국의 양계 기술이 도입되어 양계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였다.

그간 여러 계통을 통하여 우리 양계인

이 일본 미국등을 다녀왔으나 극히 한정된 범위내에서 그쳤고 그나마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였던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회에서는 금년 9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세계 가금학회 제14기 총회를 맞아 많은 우리 양계업계 지도급 인사들이 양계 선진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신청 접수중에 있다.

옛말에 백번듣는것이 직접 한번 보는것만 같지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도약의 시기에 처한 우리 양계인은 모처럼 협회에서 추진하는 해외 시찰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알면서 여건이 허락치 않아 못할경우는 언젠가 여건이 허락되면 시행할 수 있으나 모르면 영원이 시행할 수 없다.

양계 선진국에가서 많은것을 보고배워 당장은 응용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도 양계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되어질 것이다.

최근 건설등 각분야 기능공의 중동지역 등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양계장의 求人亂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있고 방역면에서도 양계의 기계화가 불가피한 이때 각종 양계기계 기구가 한자리에 전시되는 4년마다 개최되는 이번 브라질의 가금 박람회는 우리에게 더없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다.

특히 고마운것은 미국 사료곡물 협회에서(한국지부장 朴永寅) 우리 시찰단을 위해 미국의 관련 각분야를 안내하여 주기로 약속하여 준것이다.

앞아서 남이 필요하여 가르쳐 주는것을 배우던 시대에서 우리가 필요한것을 필요한곳에 찾아가 배워오는 이번기회에 많은 회원의 참여를 바란다.

생산할 수 없는 풍토의

조성이 시급

不良雜 生産을 못하게 하는것보다生産을 할수없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해마다 봄이오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왕병아리와 쉼미 즉 소위 불량추 문제이다.

농촌의 냉장고로 일컬어 지는 왕병아리는 농가에서 흘린 곡식을 주워먹고 자라며 시골에서 귀한손님이 왔을때 아낌없이 목숨을 바쳐 손님상위에 올라가고 여름철 더위에 지쳐 허약한 몸이 영계백숙의 이름으로 찹쌀, 마늘, 인삼, 밤, 대추등을 넣어 영양보충제로 널리 애용되어 왔다.

사육기간이 길고 섭취하는 사료가 다양하여 (흘린곡식, 벌레등) 그 고기맛도 대량생산되는 오늘날의 부로일러맛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몇년전 일본의 식도락가들이 우리나라의 왕병아리를 구입하여 영육도계장에서 도계 처리하여 비싼값으로 수입하여갔고 그 반응이 좋아 계속 주문이 온 적도 있다.

주로 유색 결용중에 유색 코니쉬나 백색프리머스스룩 숫닭을 교배하여 이용되어 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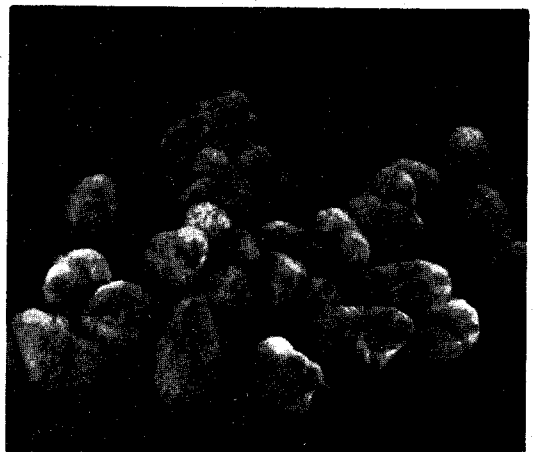
왕병아리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알수없으나 76년의 경우 1,000 만수 이상이 분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육용썬미종도 과거 우리나라 통닭구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었고 닭고기 수요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적도 있었다.

국산종계의 보급과 함께 저취를 감추었던, 썬미가 육용계(실용계)의 구입이 어려워지고 값이오르자 다시 그 생산이 시작되어 말썬이 되고 있다.

우리 양계업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이들 소위 불량추(왕병아리, 썬미)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것은 74년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대폭 개정으로 종계확인업무가 시작되어 법의 제재를 받게 되며 부터이다.

농촌에서 흘린 곡식이나 주워먹던 왕병아리가 배합사료위주로 사육되기 시작하였고 방역부재로 전염병 매개의 원흉이



되었으며 수요의 증가에 따라 병아리창수의 속임수로 선량한 농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문제가 되었고 사료효율과 위생면에서 능력이 뒤떨어진 씨미와 함께 법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

물론 이들을 하루아침에 생산을 중단케 하는 것은 아니고 양계협회의 능력검정에 출품하여 양성화 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모두 영세한 부화업자가 이에 종사하였으므로 실현이 불가능 하였다.

국산계 육종회사도 77년말에 와서야 이에 적합한 품종을 육종개발하여 처음으로 능력검정에 출품할 수 있을 정도이었다.

씨미중의 경우는 국산 육용종계를 값싸게 공급함으로써 거의 퇴치 하였으며 육용실용초생추 가격만 적정선에서 유지되면 씨미는 발붙일 곳이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해마다 반복되는 불량추 문제. 육계출하가격이 하락할때마다 말썽이 되는 불량추 문제.

이의 영원한 해결위해법을 강화하여 단속을 강화할 때 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범법자가 되며, 거래는 음성화되고 더욱 저질화되고 업체는 불신품토가 조성된다. 차라리 이런방법보다는 우리가 씨미 추방에서 경험했듯이 농가에서 원하는 우수품종을 농가에 맞게 개발하여 값싸게 공급만이 불량추 근절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왕병아리의 수요가 있는이상 법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양계인의 양심이 허락치 않는다.

1976년도의 서울지역에서의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시 상황이 아직도 머리속에 생생하다.

축산이라면 무엇이든 협조해 드립니다

취급종류

(1) 축산약품

- 소독제
- 예방약
- 치료제
- 기타약품 일절

(2) 축산기구

- 사료통, 물통
- 케이지
- 연속주사기
- 배합기
- 계란선별기
- 데비커
- 기타 기구 일절

(3) 축산물 시세속보

- 육계 { 하이브로
 { 씨미
- 노계 { 백색
 { 유색

☎ (39) 9658

삼송가축약품상사

